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출년월일 : 2000년 4월 일

제출자 : 달성군



###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 신설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군세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함.

###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3. 주요골자

-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3조)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하고,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 함께 신고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함(안 제21조 : 2001. 5. 1 시행)
- 자동차이전등록을 하는자가 자동차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징수토록 함(안 제40조)
-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세율인하 조정된사항을 조례에 반영(47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유지하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함(부칙안 제2항)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행세

제9조의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1,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이 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제3절의2(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의2 주행세

제41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1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1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 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6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     &lt; 신 설 &gt;</p> <p>4. <u>농지세</u></p> <p>5. <u>담배소비세</u></p> <p>6. <u>도축세</u></p> <p>7. <u>종합토지세</u></p> <p>제9조(<u>지방세심의위원회</u>)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 위원회, 이의신청분과 위원회와</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주행세</p> <p>5. ~ 8.(현행 4.~7.호와 같음)</p> <p>제9조(<u>지방세심의위원회 등</u>)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p>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⑤ (생 략)

(6)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신고납부) ① (생 략)

②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날까  
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 4. (생 략)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신 설〉

#### 4. (현행과 같음)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

〈신설〉	<p>제22조의2(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 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 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p> <p>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p>
------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 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 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이 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p>일 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p> <p>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세액이 <u>1,000원 미만</u> 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p>④제1항 내지 제3항 - .</p>
〈신 설〉	제3절의2 주행세
〈신 설〉	<p>제41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 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 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 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 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 한다.</p>

<신 설>	<p>제41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p>
<신 설>	<p>제41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 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 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 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 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세표준신 고서 사본</li> <li>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 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 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li> </ol>

<신 설>	<p>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p> <p>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7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제47조(세율)----- ----- ----- ----- ----- -----.

(과세표준) <u>400만원이하</u>	(세율) <u>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u>	(과세표준) <u>400만원이하</u>	(세율) <u>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u>
<u>400만원초과</u>	<u>12만원+400만원초과</u>	<u>400만원초과</u>	<u>12만원+400만원초과</u>
<u>1,000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16</u>	<u>1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10</u>
<u>1,000만원초과</u>	<u>108만원+1,000만원초과</u>	<u>1천만원초과</u>	<u>72만원+1천만원초과</u>
<u>2,500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27</u>	<u>4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20</u>
<u>2,500만원초과</u>	<u>513만원+2,500만원초과</u>	<u>4천만원초과</u>	<u>672만원+4천만원초과</u>
<u>5,000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38</u>	<u>8천만원이하</u>	<u>금액의 100분의 30</u>
<u>5,000만원초과</u>	<u>1,463만원+5,000만원초과</u>	<u>8천만원초과</u>	<u>1천872만원+8천만원초과</u>
	<u>금액의 100분의 50</u>		<u>금액의 100분의 40</u>
제61조(신고납부 등) ① · ② (생략)		제61조(신고납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 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후 단신설>		③ - . 이 경 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 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 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